

집단소송법(안)의 내용 및 평가

- 법무부의 2020. 9. 28.자 입법예고 내용을 중심으로 -

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석 훈

법무부 집단소송법(안) 개요

▶ 집단소송을 모든 분야에 무제한 확대적용

※목적 ~ 집단적 피해 손해배상의 효율적 수단 확보와 기업의 가해 예방

▶ 기존 「증권관련 집단소송법」 폐지·흡수

▶ 원고의 주장·증명책임 완화, 문서·자료의 증거개시제도 도입

▶ 피고의 책임 유무 및 손해배상액 인정에 국민참여재판 도입 →사실상 민사배심제의 최초 도입

※ 국민참여재판 ~ 현재 형사재판에 한정

▶ 남소방지장치의 대폭 축소

▶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불복 불가, 대표당사자 결격사유 삭제 등

▶ 고의나 중과실 상행위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동시 도입

제외신고형 집단소송을 모든 분야에 확대적용

▶ 현재

▶ 증권집단소송 ~ 주권상장법인 발행 증권의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에 한정

- ▶ 증권신고서, 투자설명서, 사업·반기·분기보고서 허위공시
- ▶ 미공개중요정보 이용, 시세조종, 부정거래행위
- ▶ 감사보고서 허위작성(분식회계)

▶ 일반적으로 공동소송이나 선정당사자 제도, 특수분야(소비자, 개인정보 보호)의 경우 단체소송(침해의 금지·중지) 및 집단분쟁조정제도

- ▶ 비판 ~ 소액 다수당사자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 권리구제에 한계(관할, 증거, 소송비용) → 집단소송과 단체소송; opt out과 opt in; 소비자·공해·경쟁 한정여부

▶ 법안 ~ 공통의 이익 가진 다수인의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

▶ 소송허가 요건

- ▶ 구성원 50인 이상(다수성),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중요쟁점의 공통(공통성)
- ▶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일 것(효율성)
 - ▶ 광범위 지역에 피해자 분산, 불필요한 중복소송 해소, 소송비용 절약

원고 주장·증명책임 완화, 문서·자료 증거개시제도 도입

- ▶ 3단계 절차 ~ 1.소송허가(결정) → 2.소송(본안판결) → 3.분배
- ▶ 소송허가절차 ~ 집단소송 허가 여부 결정 절차(허가요건 심사)
 - ▶ 집단소송으로 다투어지는 사실의 확정 법률상 이익 있으면 → 증거조사 가능
 - ▶ 본안 소송절차의 증거조사방식 모두 준용
- ▶ 소송절차 ~ 청구권 유무와 손해배상액 판단 절차
 - ▶ 원고의 주장·증명책임 완화 ~ 대표당사자는 "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,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·해명해야 한다." '상대방이 답변·해명을 하지 않거나 그 답변·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'에는 법원의 석명처분 가능
 - ▶ 문서·자료 증거개시제도 ~ 쌍방은 '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·자료'를 가진 자에게 그 제출·송부촉탁명령 신청 가능, 상대방은 영업비밀 자료를 포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불가, 불응시 자료등의 기재·현상·내용 추정
 - 신청자의 주장사실 인정 가능(구체적 내용 주장곤란 + 다른 증거 기대곤란)
 - ← 제출의무 있는 자료등의 훼손, 검증·감정 방해한 경우에도 위와 같음
- ▶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~ 사실확정의 법률상 이익 소명시 위 절차 준용

책임 및 손해배상액 인정에 국민참여재판 도입

- ▶ 소송허가결정 있는 1심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원칙
 - ▶ 대표당사자의 배제의사나 법원의 배제결정 있으면 국민참여재판 배제
- ▶ 배심원은 사실인정 및 손해배상액에 관한 의견 제시
 - ▶ 청구인정 여부 평의 및 평결(전원일치 원칙 → 다수결)
 - ▶ 손해배상액은 토의 및 의견 개진
 - ▶ 평결 및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함
 - ▶ 평결과 다른 판결은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문에 기재
- ▶ 배심원 선정, 재판절차, 평결효력은 형사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유사
 - ▶ 배심원은 청구금액 10억 초과는 9인, 그 외 7인(청구원인 인정 → 5인)
- ▶ 민사배심제도의 최초 도입

남소방지장치의 대폭 축소

- ▶ 대표당사자 자격제한 및 소송대리인 수임제한 폐지
 - ▶ 증권집단소송의 "최근 3년간 3건 이상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자는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 불가" 규정 삭제
 - ▶ 대표당사자 ~ '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'란 예시규정 삭제
 - ▶ 법안 ~ "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"만 규정하고 있을 뿐임
 - ▶ 소송대리인
 - ▶ 법안 ~ "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 자"만 규정
- ▶ 소송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 불가 규정(즉시항고, 재항고 불가)
 - ▶ 폐지이유 ~ 신속한 분쟁해결, 피고는 본안에서만 다룰 수 있음
 - ▶ 대표당사자는 불허결정에 대한 즉시항고, 재항고 가능
 - ▶ 불허결정시 제소 아니한 것으로 의제(개별소송 제기 간주 x)

집단소송법(안) 총평 I

- ▶ 개혁 전 미국형 집단소송제와 유사한 제도로 설계되었음
 - ▶ 무제한 opt out형 집단소송, 문서·자료 증거개시제도, 국민참여재판,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불복 불가, 대표당사자 결격사유 삭제, 상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
- ▶ 미국은 막대한 청구금액 인용위험 부담, 광범위한 증거개시절차 부담, 주가·회사이미지 추락 등 피고회사에 부담을 줌으로써 거액의 화해금을 노리는 남소의 부작용 심각
 - ▶ 실제로 집단소송 대부분(90%이상) 청구이유 유무를 불문하고 화해종결 경향
 - ▶ 사적증권소송개혁법(PSLRA, 1995) ~ 소장 기재요건 강화(특정), 대표당사자 자격요건 개선(선접수<경제적이해관계 ; 횡수 제한) 등
 - ▶ 집단소송공정법(CAFA, 2005) ~ 집단구성원 100명 이상, 비용 제외 총 500만 \$ 초과, 연방법원 이송 등
 - ▶ 독일 등 유럽연합도 濫訴, 고비용 저효율의 소송구조, 미국 로펌의 법률시장 잠식 우려로 미국 집단소송 불수용하고 opt in형 단체소송 선호
- ▶ 법안은 화해금 노린 개략적 주장에 의한 濫訴의 길을 열어주는 것
 - ▶ 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의 사냥터 제공 → 기업과 국가경제의 타격 예상

집단소송법(안) 총평Ⅱ

- ▶ 증권집단소송에 대한 평가
 - ▶ 2005. 1. ~ 2020. 3. 제소 15건
 - ▶ 과소 주장 → 증거개시, 징벌적 손해배상, 민사배심 도입, 대표당사자·소송대리인 결격사유 삭제 등 주장(↔ 결격사유 해당 여지 없었음)
 - ▶ 1건이 수십 ~ 수만 건 개별소송을 대신하는 특수 소송 → 과소 x
 - ▶ 소송허가 확정에 수년이 걸리는 것은 개선 필요 ~ 즉시항고 신속처리
 - ▶ 민사소송의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증거수집에 실효적인 제도로 개선 필요
 - ▶ 대표당사자 횡수제한 있으면 소송대리인 횡수제한은 삭제 필요
 - ▶ 남소방지가 지나친 것인지 여부는 개별소송 이용실태와 비교 필요
- ▶ 우리나라 분쟁해결 문화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함
 - ▶ 소액의 집단적 피해자는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보다는 비용이 적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행정감독이나 형사절차 선호
 - ▶ 행정개입, 형사처벌 사례가 외국보다 많은 편
 - ▶ 기관투자가 등 資力있는 피해자는 번잡하지 않은 개별소송 선호
 - ▶ 미국과 같이 사건발굴에 앞장서는 전문 변호사의 부족

집단소송법(안) 총평Ⅲ

- ▶ 집단소송법 제정 논거에 대한 비판
 - ▶ '집단적 피해 손해배상의 효율적 수단 확보와 기업의 가해 예방도모' 논거에 대하여
 - ▶ 개별제소 곤란한 소액 다수 피해자 아닌 한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함이 합헌적이고 일반소송절차와 정합
 - ▶ 소액 다수 피해자의 효율적 배상제도는 미국식 집단소송만 있는 것이 아님 → 남소위험 적고, 성문법국가에 맞는 단체소송 개선이 바람직함
 - ▶ 미국식 집단소송은 분쟁의 사적해결 문화 아래에서 전문 변호사들이 패소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며 적극적으로 사건을 발굴하는 미국에서나 활성화 가능
 - ▶ 기업 가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은 행정감독·단체소송이 효율적·저비용
- ▶ 집단소송 확대의 경우 차선택
 - ▶ 현행 증권집단소송을 소비자분쟁에 한하여 시험적으로 시행 후 평가
 - ▶ 남소방지장치는 더욱 강화 ~ 소장기재 사실관계 특정 및 근거 소명 요구 → 불응시 각하(pleading절차: 증거개시절차 정지 ← 미국 PSLRA)